

業에 필요한 費用에 應當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告示한 都市計劃區域 안에 있는 土地·建築物를 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는 目的稅로서 地方 市·郡地域에서는 都市地域과 農村地域 등이 혼재되고 있어서, 都市計劃稅賦課를 勸獎하는 趣旨에서 告示制度가 運營되고 있으며 우리 서울特別市는 全 地域이 都市計劃區域으로 指定되어 있어서 都市計劃稅賦課區域입니다. 1991年 12月 31日字 條例第2860號에 의하여 서울特別市稅條例 전문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節次上이 告示도 議會 議決을 거쳐서 都市計劃稅賦課 區域을 다시 告示코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내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전지역”으로 決定하고자 하는 것으로, 10月 納期에 土地分 때도 竝記해서 都市計劃稅가 添加해서 나가고 또 6月달에 建物分財產稅 때도 都市計劃稅가 添附가 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議案番號 271號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提案理由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90.11.6자로 改正된 地方財政法 施行令(令 13156號)에 따라 公有財産의 大부료등을 算定함에 있어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財産價額을 算定하도록 함에 따라 一部地域의 大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大부료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大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 하도록 大부료등을 조정하기 위한 市·道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準則이 '91.12.31자로 內務部에서 示達됨에 따라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 골자는 公有財産을 繼續해서 2個年 이상 占有하거나 使用·受益하는 경우에 前年度 年間貸付料보다 10% 이상 增加한 경우에는 負擔이 急增하지 않도록 下向調整.

參考 事項으로 關聯法規로서는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92條가 되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은 第23條의2 貸付料등에 관한 特例 規定을 두는 것입니다. 公有財産을 繼續해서 2個年度 이상 占有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第23條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年間 貸付料, 이것은 使用料, 辨償金을 包含하는 것입니다. 이 貸付料가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年間 貸付料보다 10% 이상 增加한 때에는 當該 年度의 貸付料 引上率은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適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增加率	貸付料引上率
10%以上~20%未滿	10%+(增加率-10%)×0.3
20%以上~50%未滿	13%+(增加率-20%)×0.1
50%以上~100%未滿	16%+(增加率-50%)×0.06
100%以上~200%未滿	19%+(增加率-100%)×0.03
200%以上~500%未滿	22%+(增加率-200%)×0.01
500%以上~	25%+(增加率-500%)×0.005

實例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恩平區 津寬 內洞 409番地 29號 강영달씨가 占有하고 있는 道路敷地 41.4坪에 대하여는 90年의 課稅市價標準額에 의거 3萬 5,300원이 賦課되었는데 91年度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算定을 해 보니까 244萬 5,450원, 무려 6,927%나 上昇한 結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條例 改正案에 따른 料率 算定基準으로 調整을 해 보면 5萬 5,425원이 產出이 되어서 90年度보다 57% 정도가 引上이 되는 이런 內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各 區에 이런 例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은 市有財産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디만 國有財産에 관해서도 이미 國有財産법시행령이 改正이 되어서 國有財産에 대해서는 積極的으로 이것이 適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國有財産, 區廳에서 管理하고 있는 財産에 대해서도 같은 準則이 區廳에도 示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22個 區 가운데서 13個 區가 議會가 開院이 되어서 13個 區에서는 이 條例가 審議·通過가 되었고, 나머지 9個 區에서는 議會가 開院이 되는대로 審議가 될 이